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20. 7. 1. 현재

대구광역시 ·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목 차

Ⅰ.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사항 ---------- 7
2.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23
3.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24
4.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기준정보 --------- 28

Ⅱ. 참고자료

1.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 59
2. 사업별 검사도구 ---------- 63
3.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 98
4. 적용 연령출생연도 기준표 ---------- 100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사항

1.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총 14개 사업**(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참고)

2. 사업 재구조화

2020년 상반기 기준정보는 2020. 1. 부터 적용하며, 2020년 하반기 변경 기준정보는 2020. 7. 부터 적용함. 2019년 이용자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준정보 변경 사항은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참고(p.24)

3.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 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서비스 신청

▶ 이용자 통보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 내 제공기관 선택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 안내(예시: 이용자가 제공기관 선택에 제공기관 품질관리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에 안내)

- 해당 제공자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1. 대구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1개의 서비스 이용 가능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중복이용 불가 - 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사업별 기준정보 확인 필수)

서비스이용자자격 상실(당해연도 서비스이용 불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2.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전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비스 신청 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이드' 교육용 영상 시청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실시절차

상담 및 욕구조사	⇨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서비스 종료	⇦	모니터링 및 평가	⇦	서비스 실시

○ 상담

-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제32호 서식, 제33호 서식)
- 상담내용 : 서비스 제공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 필요 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반영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상담시 파악된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이 작성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 및 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 실시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대구시 자체서식 [3-29], 제34호 서식, 제35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정의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당사자 :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 계약 절차
  - 이용자를 "이용자" 로 제공기관을 "제공기관" 으로 계약서 작성(제36호 서식, 제48호 서식)
  - 계약시 이용자별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제34호 서식, 제35호 서식, 대구시 자체서식 [3-29])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실시

-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후 검사 실시(필수)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보건소등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결제 불가)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 1회 대체가능)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로 사전검사를 갈음(별도의 바우처 결제 불가), 단발성(1회성)서비스는 사전검사 미실시 가능

* 초기상담기록지는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히 작성된 경우 사전검사로 인정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대구시 자체서식 [3-10] 사용필수)**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기록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며,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내용은 워드작성 가능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확인 등 필수

※ 제공기록지에 제공인력 및 이용자(보호자) 서명의 경우 반드시 정자서명

- 서비스 제공(이용)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 단, 6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이용), 서비스 선택, 서비스 성과, 이용자 의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에 따라 항목 추가 가능

*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설문지(예시) : 제47호 서식
결과데이터 분석사이트(사회보장정보원, http://ssv.hrcglobal.com/)

○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상담 실시

-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 사용했던 검사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 종료 시기

- 개인별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만료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가 계약해지 할 때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 통지

▶ 종료 절차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 서비스 종료안내문 (예시) : 제8호 및 제9호 서식
  * 서비스 종료(상담) 기록지 : 대구시 자체서식 [3-13]

5. 전자 바우처 카드 결제

○ 결제 원칙

▶ 결제방법

-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전용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
-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부지원금)를 입력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

▶ 결제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 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단말기 상 정상결제 체크,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사업에 따라 시·도에서 정한 1일 서비스제공 횟수에 따라 결제 가능횟수는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선결제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 결제금액

-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회당 금액(P/N)을 결제

※ 회당 결제금액은 회당 서비스 시간과 상관없이 결제편의상 월당 횟수(N)로 나눈 것이며, 각 회별 서비스 내용을 반영한 실질적 단가가 아니므로, 각 회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기타) 사업 특성상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은 월별 결제 허용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한정적으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만 허용

기타	결제 시기	월별결제 - 각 서비스별 대면접촉(정기 유지보수, 정기 집합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날 결제
	결제 금액	해당 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 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결제

○ 기타 결제

▶ 소급결제

-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1) 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3) 단말기 분실·고장, 4)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 가능 시기)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래 서비스 제공월의 익월(다음월)까지 가능

※ 이용자 카드 단순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당일까지 가능(이후 소급결제 불가)

- (소급결제 방법) 단말기 결제시 결제유형을 **"소급결제"** 로 선택하고 결제

- (소급결제 관련 사후 관리) 부득이한 경우 소급결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가 다수 발생한 기관은 현장점검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 예정

▶ 서비스 보충 제공(보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및 결제방식

- (보강)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예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월까지만 보강 후 당일에 바우처 결제 가능(5월 보강 불가)

-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단말기 결제 시 결제유형을 “보강결제” 로 선택하고 결제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이 인정(단, 사업에 따라 1일 2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보강 결제도 2회까지 가능)
-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음(바우처 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 불가)**
-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증빙자료 제출)

  (예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에 보강을 하는 경우, 3월 1일~3월 23일까지만 보강 가능(전월 보강은 불가)

▶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소급결제 또는 보강을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 서비스이용기간 종료월 말일 24:00시 이후 잔여바우처 전량 소멸되므로 보강하더라도 결제불가

6.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 청구

▶ 청구기관 : 제공기관

▶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 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 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서비스 제공 시마다 실시간으로 청구
-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청구’ 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소급결제’ 로 청구하고 ‘소급결제’ 도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 가능

○ 비용의 지급

▶ 정기지급
- 서비스 제공 비용 정기지급일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비용 지급 계좌

-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 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계좌
- 제공기관이 서비스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 을 통해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등

▶ 관련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과오반납 처리절차

▶ 과·오청구 여부 확인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시·군·구로 반환된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비용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로 고지서 발급요청

▶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 (과·오반납 승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과오반납 비용 직접처리 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 용
과오청구 반환	제공기관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과오결제한 결제 건을 반납
반납승인 및 비용차감	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반납 건에 대해 반납승인일이 속한 날짜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 * 지급예정액을 활용한 차감 지급이 가능한 경우, 과오반납 처리가 완료되며, 차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반납 요청
직접 반납요청	정보원 → 제공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반납 건 중 지급예정액으로 차감지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과오반납 금액 입금	제공기관 → 정보원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정된 기한내에 과오반납 금액을 입금
직접 반납 비용 처리	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납한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납한 비용을 해당 사업 계좌로 이체 *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접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내역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

7.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원칙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예시)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 납부방법 : 제공기관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제30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 후원

- 후원자가 후원금 수혜자를 특정 제공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서 직접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여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이 발생하면 환급
- (환급범위) 이용자의 이용중단 후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
- (실시간 결제 서비스) 회당 본인부담금 납부액(월별 기 납부한 본인부담금/월 서비스 횟수)을 미제공한 서비스 횟수를 곱하여 환급
- (월별 결제 서비스) 아래 구분 및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환급금액 결정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 귀책시	50% 초과 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 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 귀책시	50% 이하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 이용	환급 없음

※ 이외의 환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종별 표준약관' 참고

▶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무단결석) 본인부담금 환급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공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실시간 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무단결석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바우처 이용을 유도하며,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보조

※ 이용자의 무단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불가(바우처의 기본적인 특징상 이용자-제공자의 담합에 취약하므로 부정행위 가능성 차단 필요)

8.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 이용권법 제20조의'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 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시스템'지급보류 현황조회'화면에서 검토 결과 내역 통보 ·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 대상선정

- 지급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 대상선정 주기 : 매일

▶ 소명 제출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 소명자료 : '사실확인서'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사실확인서' 는 대구지원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기관운영서식에 게시

▶ 검토결과 통보

-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 검토결과 종류

① 적　　정 :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②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③ 부 적 정 :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철회 처리도 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 (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 비용지급

- 지급시기 : 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익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구 분	결 제 일	지 급 일
1차	1일~10일	익월 5일
2차	11일~20일	익월 15일
3차	21일~말일	익월 25일

▶ 기타사항

-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단가와 교통지원금 등도 지급불가

▶ 재검토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별지 2)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는 대구지원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기관운영서식 에 게시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2016.6) (전자바우처시스템 〉 시스템관리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관리·감독

9. 예외지급

○ 개요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청구공문 •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기록지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시·군·구
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 또는 오생성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미생성 대상자는 해당 월 예외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반드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필요

○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 시 · 군 · 구청장 인정

●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 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20.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20.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20.1.21 이전 건은 청구 불가)

-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

●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 ~ 말일까지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26일 비용 지급

※ 26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인 경우 익일에 지급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포인트)	청구사유	증빙서류
○○ 복지 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1114)	1	2020.01.12	36,000	자격만료 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2020.01.17	36,000		
						2020.01.19	36,000		

[작성방법]
- 사업유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세부사업명과 서비스코드 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 : 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25일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 : FAX 발송(☏ 국번없이 1600-4397)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 → 시·군·구)
- (개요) 대상자 자격 착오해지 등의 사유로 결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익월에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 바우처 결제유효기간 연장 대상자는 소급결제만 가능, 예외지급 청구는 불가
- 바우처 해지 사유에 따른 결제종료일자 기준으로 1개월 연장됨에 유의
  ※ '본인포기'사유로 10월 4일에 해지된 경우 결제유효기간 연장 시 11월 4일까지만 결제가능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제공기관)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시군구)

10. 기타 사항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5호(2016. 12. 27 개정)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단,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이용자 신청 시 준수사항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및 단체 신청접수 불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우미 운영
- 추진목적
  ▶ 행정복지센터 도우미 활동관련 준수사항 및 사업관련 이해도 향상 도모
  ▶ 행정복지센터 도우미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사업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사업이해도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2020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우미 배치
  ▶ 배치기간 : 2020. 1. 9(목) ~ 15(수)(5일간, 이용자 신청 집중기간)
  ▶ 기타사항 : 교육 이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우미 최종 배치

2.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2019년		2020년		비고
		코드	구군	코드	구군	
1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170104	8개구군	170104	8개구군	
2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160104	8개구군	160104	8개구군	
3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 (Fun,Fun)한 맘	990404	8개구군	990404	8개구군	
4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100104	8개구군	100104	8개구군	
5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030404	8개구군	030404	8개구군	
6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	190104	8개구군	190104	8개구군	
7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990204	8개구군	990204	8개구군	
8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0101	8개구군	070101	8개구군	
9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270104	8개구군	270104	8개구군	
1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904	8개구군	010904	8개구군	
11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051004	8개구군	051004	8개구군	
12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992304	8개구군	992304	8개구군	
1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0504	8개구군	080504	8개구군	
14	정신건강증진서비스	090104	8개구군	090104	8개구군	

3.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1. 상반기 변경사항

페이지	구분	내용	2019년	2020년 상반기	비고
30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서비스 대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신청 구비서류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 평가서 - 일반 기관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신청 구비서류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 평가서~~ - 체육관련 기관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와 평가자의 체육관련 자격 첨부	기준 중위소득 변경 및 신청 구비서류 조정
		제공 인력	① 스포츠지도사 ② FT(Functional Training)coach 소지자 ③ Active Core Trainer 소지자 ④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⑤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⑤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	① 스포츠지도사 ② Functional Training 및 Active Core Certification 관련 자격 소지자 ③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	제공인력 자격 기준 완화
		서비스 가격 및 제공 기간	A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A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 중위소득 120%초과~중위소득 170% 이하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인한 등급조정
32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제공 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미술치료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제공인력 자격 기준 추가
34	노인정서 치유 서비스 "마음건강 지침이"	제공 인력	▷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경력 1년 이상인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경력 1년 이상인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이수교육 명칭 명확화

페이지	구분	내용	2019년	2020년 상반기	비고
4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공 인력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제공인력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권고안 반영)
4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가
		제공 인력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기본서비스와 제공인력 자격기준 일치

페이지	구분	내용	2019년	2020년 상반기	비고
48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인력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프로그램(건강상태점검)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프로그램(건강상태점검)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제공인력 기준 삭제 (보건복지부 권고안 반영)
50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제공 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심리학과, 상담학과,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유사관련 학과 추가

2. 하반기 변경사항

페이지	구분	내용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비고
-	전체 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제외)	본인 부담금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보건복지부 지침 (P.20) 반영
32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제공 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미술치료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자격기준 명확화
50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제공 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심리학, 상담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자격기준 추가 및 자격기준 명확화
54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서비스 대상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3개월 이상의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이용자 욕구기준 확대

4. 2020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기준정보

[시개발 사업코드 : 170104]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감소</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령 : 만 1세 이상~만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욕구기준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중 부모, 자녀 변경 불가)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편편한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 이상~만 6세 이하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서비스 대상자 : 해당 아동 입력(행복e음)</td></tr>
<tr><td>③ 제공인력</td><td>▹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 발달 민간자격소지자 중 관련경력 6개월 이상인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r>
<tr><td>정부지원금</td><td>90,000</td><td>80,000</td></tr>
<tr><td>본인부담금</td><td>10,000</td><td>20,000</td></tr>
</table>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2">기본 서비스</td><td>- 부모역할교육 및 상담서비스</td><td>월 1회
(회당 50분)</td></tr>
<tr><td>- 상호관계증진서비스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td><td>월 4회
(회당 50분)</td></tr>
<tr><td rowspan="2">부가 서비스</td><td>- 성격유형검사</td><td>연 1회</td></tr>
<tr><td>- 사전/사후검사(양육스트레스, 아동발달기초검사)</td><td>연 2회</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부모 :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 아동발달 기초검사)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부모 : 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 : 아동발달기초검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원칙,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⑦ 집단규모</td><td>- 1:5(부모+아동)
- 개별서비스 인정불가(2팀 이상 가능)</td></tr>
<tr><td>⑧ 기타</td><td>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5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18,000원, B등급 : 16,000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r>
<tr><td>A등급</td><td>90,000</td><td>18,000</td><td>18,000</td><td>18,000</td><td>18,000</td><td>18,000</td><td>10,000</td></tr>
<tr><td>B등급</td><td>80,000</td><td>16,000</td><td>16,000</td><td>16,000</td><td>16,000</td><td>16,000</td><td>20,000</td></tr>
</table>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사전/사후검사(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발달기초검사), 성격유형검사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어린이집, 유치원(정부지원금 지원기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여부는 정규이용 시간 외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정규 이용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등원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예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기관장이 확인한 월별 출결석 확인서 등)를 제출 시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4)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외, 지역아동센터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
5)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6)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되 결제불가
7)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8)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9)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10)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1)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2)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 단위, 월 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td></tr>
</table>

[시개발 사업코드 : 160104]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인지·학습·정서문제를 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연 령 : 만 4세 이상~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체육관련 기관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와 평가자의 체육관련 자격 첨부</td></tr>
<tr><td>③ 제공인력</td><td>① 스포츠지도사
② Functional Training 및 Active Core Certification 관련자격 소지자
③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70%이하)</th></tr>
<tr><td>정부지원금</td><td>144,000원</td><td>128,000원</td><td>112,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6,000원</td><td>32,000원</td><td>48,000원</td></tr>
</table>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2">기본 서비스</td><td>1. 운동프로그램
(뇌 자극 운동 : 스트레칭, 코어근육운동, 밸런스 도구운동 등)</td><td>주 2회/월 8회
(회당 60분)</td></tr>
<tr><td>2. 기초검사(기능성 움직임검사, 좌·우뇌 불균형 진단, 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및 운동처방, 신체활동, 정서·심리상담, 영양프로그램</td><td>분기 1회
(회당 60분)</td></tr>
<tr><td>부가 서비스</td><td>부모상담 및 교육(운동, 영양, 두뇌교육 등)</td><td>연 2회
(회당 90분)</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⑦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1:15)</td></tr>
</table>

항 목	내 용
⑧ 기타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8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18,000원, B등급 : 16,000원, C등급 : 14,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A등급	144,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6,000
B등급	128,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32,000
C등급	112,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48,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어린이집, 유치원(정부지원금 지원기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여부는 정규이용 시간 외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정규 이용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등원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예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기관장이 확인한 월별 출결석 확인서 등)를 제출 시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4)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외, 지역아동센터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
5)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6)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되 결제불가
7)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8)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9)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10)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2) 추가 확보 시설 : 초등학교, 공공기관(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포함)만 예외적 인정
13) 필수운동기구 7종(폼롤러, 와와고, 점퍼, 플랙시바, 다이나믹 에어쿠션 XXL, 짐볼, 짐스틱) : 7종 운동기구는 필수이며, 이 외에 서비스 추가 시 운동기구 추가 가능
14)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시개발 사업코드 : 990404]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1.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당당한 부모가 된다.
2. 가족 간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
3.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위한 진로코칭을 통한 현명한 부모가 된다.</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욕구기준 :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초·중·고등학생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td></tr>
<tr><td>③ 제공인력</td><td>▹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td></tr>
<tr><td>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tr>
<tr><td>정부지원금</td><td>144,000원</td><td>128,000원</td><td>112,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6,000원</td><td>32,000원</td><td>48,000원</td></tr>
</table>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3">기본 서비스</td><td>1.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진로코칭 등)</td><td>주 1회/월 4회
(회당 180분)</td></tr>
<tr><td>2. 사전 · 사후 검사(심리검사)</td><td>연 2회
(회당 120분)</td></tr>
<tr><td>3.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td><td>연 2회
(회당 240분)</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⑦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0인 이내(1:10)</td></tr>
</table>

⑧ 기타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4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36,000원, B등급 : 32,000원, C등급 : 28,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A등급	144,000	36,000	36,000	36,000	36,000	16,000
B등급	128,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C등급	112,000	28,000	28,000	28,000	28,000	48,000

- **연간프로그램이 있는 월은(정부지원금) ÷ 서비스 실시 횟수 = 회당 결제 비용**

ex)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연간프로그램) 1회+집단상담프로그램 월 4회로 총 5회 실시할 경우 :
회당 A등급 28,800원, B등급 25,600원, C등급 22,400원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A등급	144,0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16,000
B등급	128,0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32,000
C등급	112,0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48,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합반가능

8)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9)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0)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시개발 사업코드 : 100104]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1.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한 상호지원 및 지지체계 형성으로 삶에 대한 활력 증진
2. 나이 듦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해 가치로운 자기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
3. 심리진단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 령 : 만 65세 이상 노인
▹욕구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 평가서(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td></tr>
<tr><td>③ 제공인력</td><td>▹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인 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정서치유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table>
<tr><th>서비스 가격</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20,000원</td><td>108,000원</td><td>12,000원</td></tr>
</table>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3">기본 서비스</td><td>정서 프로그램(대중음악/ 미술)</td><td>주 1회/월 4회
(회당 90분)</td></tr>
<tr><td>상담프로그램 - 집단상담</td><td>주 1회/월 4회
(회당 90분)</td></tr>
<tr><td>상담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진단</td><td>연 2회
(회당 60분)</td></tr>
<tr><td rowspan="2">부가 서비스</td><td>자존감 향상 발표회(인생설계, 강점찾기, 행복나누기, 문학나누기 등)</td><td>연 1회
(회당 120분)</td></tr>
<tr><td>대중문화체험</td><td>연 3회
(회당 180분)</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⑦ 집단규모</td><td>기본서비스 집단 규모 준수(정서프로그램 1:20, 집단상담 1:10)</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⑧ 안전기준</td><td>1) 체험활동 시, 안전관련 서류 구비
2)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서류 : 배상/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td></tr>
<tr><td>⑨ 기타</td><td>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8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13,500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9">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h>6회</th><th>7회</th><th>8회</th></tr>
<tr><td>1등급</td><td>108,0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3,500</td><td>12,000</td></tr>
</table>
2) 체험활동 시 : 계획서, 결과보고서 구비·보관(내용, 장소, 시간, 이용자 명단, 사진 등 포함), 안전관련 구비서류(매 체험 시마다 구비)
3)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4)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5)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되 결제불가
6)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7)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8)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9) 집단간의 합반, 혼합 서비스제공 불가(부가서비스는 가능)
10) 간식 및 식사 제공 불가
11)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2)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3)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td></tr>
</table>

[시개발 사업코드 : 030404]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교육환경변화, 가족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령 : 만 7세 이상~만 13세 이하
▹욕구기준 :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부모아동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 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택 1)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추천서(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발급)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td></tr>
<tr><td>③ 제공인력</td><td>①정서프로그램 :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놀이치료,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제공서비스와 동일한 악기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td></tr>
<tr><td>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r>
<tr><td>정부지원금</td><td>180,000원</td><td>160,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20,000원</td><td>40,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td></tr>
<tr><td>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상담 제공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횟수</th></tr>
<tr><td rowspan="5">기본 서비스</td><td>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지도 (그룹 내 개별지도 가능, 참여아동 합주 포함)</td><td>주 1회/월 4회 (회당 60분)</td></tr>
<tr><td>2. 정서순화 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 재활 (심리또는상담)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td><td>주 1회/월 4회 (회당 60분)</td></tr>
<tr><td>3. 향상음악회 참여(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td><td>연2회</td></tr>
<tr><td>4. 전문음악회 관람(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td><td>연2회</td></tr>
<tr><td>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 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td><td>제공기간 중</td></tr>
<tr><td>부가 서비스</td><td>6. 제공인력 합동 사례회의</td><td>연 1회</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⑦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3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1:3)/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⑧ 안전기준</td><td>1) 전문음악회 관람 시, 안전관련 서류 구비
2)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서류 : 배상/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td></tr>
<tr><td>⑨ 기타</td><td>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8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22,500원, B등급 20,000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9">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h>6회</th><th>7회</th><th>8회</th></tr>
<tr><td>A등급</td><td>180,0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2,500</td><td>20,000</td></tr>
<tr><td>B등급</td><td>16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40,000</td></tr>
</table>
- 연간프로그램이 있는 월은(정부지원금) ÷ 서비스 실시 횟수 = 회당 결제 비용
ex)향상음악회 참여 1회 +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 프로그램 월 8회로 총 9회 실시할 경우 :
회당 A등급 20,000원, B등급 1~8회기까지 17,770원씩 결제, 9회기 17,840원 결제/ 회기당 결제금액 유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9">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h>6회</th><th>7회</th><th>8회</th><th>9회</th></tr>
<tr><td>A등급</td><td>18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
<tr><td>B등급</td><td>160,00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770</td><td>17,840</td><td>40,000</td></tr>
</table>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외, 지역아동센터 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
4)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5)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되 결제불가
6)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7)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8)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9)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0)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1) 클래식 악기기준 : 기존 성악·피아노 허용
- 피아노(어쿠스틱 피아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의 경우 76건반 이상만 인정됨
- 클래식 악기 분류
· 현악기군
(바이올린족, 비올족, 바리톤족, 기타족, 류트족, 하프족, 치터족, 하프시코드족)
· 관악기군
(관악기, 리코드족, 플루트족, 오보에족, 클라리넷, 숌족, 오르간족)
- 기존 악기기준 중 타악기류 삭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악기와 무상대여를 위한 악기 필수 구비
12)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td></tr>
</table>

[시개발사업코드 : 190104]

백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1. 노인을 위한 다양한서비스(운동, 영양, 건강교실, 문화체험)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
2. 홀로 사는 남녀 노인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새 인연, 새 행복’ 서비스 제공
3. 문화체험, 행복노후복지정보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소셜라이프 서비스 제공</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영양과 건강특강 p/g :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운동교실 및 여가레크레이션 p/g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행복노후복지정보교실, 문화체험 전체만남 : 사회복지사</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회당 결제(월 7회)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tr>
<tr><td>정부지원금</td><td>144,000원</td><td>128,000원</td><td>112,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6,000원</td><td>32,000원</td><td>48,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3">기본 서비스</td><td>1. 소그룹모임 : 영양과 건강특강 p/g, 운동교실 및 여가레크레이션 p/g, 행복노후복지정보교실 각 월 2회 제공</td><td>월 6회
(회당 90분)</td></tr>
<tr><td>2. 문화 체험</td><td>월 1회
(회당 240분)</td></tr>
<tr><td>3. 전체 만남</td><td>연 1회
(회당 240분)</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⑦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20인 이내(1:20)</td></tr>
<tr><td>⑧ 안전기준</td><td>1) 체험활동 시, 안전관련 서류 구비
2)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서류 : 배상/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td></tr>
</table>

항 목	내 용

⑨ 기타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7 = 회당 결제 비용
: 회당 A등급 1~6회기 20,570원씩 결제 7회기 20,580원 결제, B등급 1~6회기 18,280원씩 결제 7회기 18,320원 결제 C등급 1~7회기 16,000원 결제/ 회기당 결제금액 유의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A등급	144,000	20,570	20,570	20,570	20,570	20,570	20,570	20,580	16,000
B등급	128,000	18,280	18,280	18,280	18,280	18,280	18,280	18,320	32,000
C등급	112,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48,000

- 연간 프로그램이 있는 월은(정부지원금) ÷ 8 = 회당 결제 비용
ex) 전체만남(연간프로그램) 1회, 소그룹모임+문화체험 월 7회로 총 8회 실시하였을 경우 회당 A등급 18,000원, B등급 16,000원, C등급 14,000원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A등급	144,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6,000
B등급	128,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32,000
C등급	112,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48,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집단간의 합반, 혼합 서비스제공 불가, 문화체험과 전체만남 집단 합반 가능(ex 1:20이내, 2:40이내)**
8)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9) 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
10) 간식 및 식사 제공 불가
11)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시개발사업코드 : 990204]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약물 및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생활 지원</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득, 연령기준
- 만 12세 이상, 소득기준 없음
- 가구원 중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 욕구기준
① 약물 중독
- DSM-Ⅳ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② 도박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 이상으로 확인된 도박 중독자 및 가족
③ 알코올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④ 복합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합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가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 중독
- 쇼핑중독 자기진단 검사지 10문항 중 2,3,4,7,9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1,8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쇼핑중독자와 그 가족
ⓑ 니코틴 중독
- 니코틴 의존검사(FTND) 4점 이상으로 확인된 니코틴 중독자와 그 가족
ⓒ 성인 인터넷 중독자
- 성인인터넷중독자가진단K척도로 총점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으로 확인된 인터넷중독자와 그 가족
ⓓ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척도로 총점 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으로 확인된 스마트폰중독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각각의 중독문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련 전문기관 기관장의 소견서 또는 평가서(개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정 및 평가를 한 경우 해당되는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필수)
※ 평가서 예시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신청권자 :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대상자(가족신청가능)</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관련 경력 1년 이상인자)
▹ 중독전문가(한국중독전문가협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중독전문사회복지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자격자로서 중독상담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table>
<tr><th>구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r>
<tr><td>정부지원금</td><td>198,000원</td><td>176,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22,000원</td><td>44,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
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4">기본 서비스</td><td>1. 개별상담(1:1)
- 개인별 맞춤형 상담, 중독 단계별 개입
- 사전·사후검사 실시</td><td rowspan="4">월 7회(회당 60분)

(단, 집단상담의 경우 월 2회 이하 제공 가능)</td></tr>
<tr><td>2. 집단상담(1:10)
- 집단의 역동과 힘을 이용한 그룹 재활(심리 또는 상담)</td></tr>
<tr><td>3. 가족역량강화
- 공동 의존의 어려움을 가진 가족들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응력 향상</td></tr>
<tr><td>4. 위기개입 및 지역연계
- 삶의 위기와 생활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td></tr>
<tr><td>⑦ 집단규모</td><td>기본서비스 집단 규모 준수(개별상담 1:1, 집단상담 1:10)</td></tr>
<tr><td>⑧ 기타</td><td>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7 = 회당 결제 비용
: A등급:1~6회기 28,280원, 7회기 28,320원, B등급:1~6회기 25,140원 7회기 25,160원
/ 회기 당 결제금액 유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8">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h>6회</th><th>7회</th></tr>
<tr><td>A등급</td><td>198,000</td><td>28,280</td><td>28,280</td><td>28,280</td><td>28,280</td><td>28,280</td><td>28,280</td><td>28,320</td><td>22,000</td></tr>
<tr><td>B등급</td><td>176,000</td><td>25,140</td><td>25,140</td><td>25,140</td><td>25,140</td><td>25,140</td><td>25,140</td><td>25,160</td><td>44,000</td></tr>
</table>
2) 욕구기준 상세설명
- 기타행위중독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미디어, 성, 쇼핑 등
- 복합중독 : 중독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거나 교차중독 대상자 ex)도박+담배 중독자, 인터넷게임+ 알코올 중독자 등
3)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4)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5)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6)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7)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8) 집단서비스 실시할 경우 사유서 혹은 소견서 필수
-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합반 가능
9)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0)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1)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td></tr>
</table>

[시개발사업코드 :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신청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td></tr>
<tr><td>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반기별 결제(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
<table>
<tr><th>구 분</th><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th></tr>
<tr><td>정부지원금</td><td>108,000원</td><td>96,000원</td><td>84,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2,000원</td><td>24,000원</td><td>36,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2017년 신규이용자부터 적용)</td></tr>
<tr><td>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td><td>1. 보조기기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변경, 맞춤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유지보수(예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상담, 불만처리, AS상담 등</td><td>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제한없음)</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회수 등 사후관리</td></tr>
</table>

항 목	내 용
⑥ 집단규모	해당 없음(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됨)
⑦ 기타	1) 별도 서식 사용(초기상담기록지, 서비스 제공 계획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2)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3)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검사 필수**(※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초기상담기록지에 이용자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히 작성된 경우에 한함)로 사전검사를 갈음(별도의 바우처 결제불가) **4)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시개발사업 : 270104]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서문제, 가족생활문제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소를 최소화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대구지역사회 내 중소기업(6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 기업체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 선정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600인 이하 사업장 확인용)
- 기업체 협약서(사본)</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근로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등 상담관련 분야 및 운동 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담, 코칭 및 운동 관련 실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자기계발, 대인관계, 상담, 정서지원, 운동지도, 신체 건강 증진활동 관련한 민간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구 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h><th>D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th></tr>
<tr><td>정부지원금</td><td>144,000원</td><td>128,000원</td><td>112,000원</td><td>96,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6,000원</td><td>32,000원</td><td>48,000원</td><td>64,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td></tr>
<tr><td rowspan="2">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 ①~⑥ 중 최소 3개 이상 이용자 선택 제공(월 4회)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기본 서비스</td><td>① 정서지원서비스 : 직장생활 및 가정의 관계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불안,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부부대화, 부모자녀 상담 등 미술재활(상담 및 심리), 음악재활(상담 및 심리), 레크레이션, 심리검사 등)
②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동기강화, 자신과 타인 이해, 의사소통, 관계형성 유지 프로그램
- 직장내 자신의 목표설정, 성과관리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③ 라이프 코칭 서비스 : 직장생활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 라포형성, 자기개방, 감정표현, 무의식놀이, 관계탐색 등
-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
④ 건강힐링서비스 :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서비스
- 기초체력, 관절가동력,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운동상담
- 맨손체조, 건강체조 등 유연성, 교정, 근력강화 스트레칭
- 수영, 에어로빅, 라인댄스, 세라밴드, 짐볼, 필라테스, 요가, 헬스, 스트레스 클리닉 등
⑤ 부부관계증진 서비스 :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 집단상담을 통한 부부소통 프로그램
- 역할극 테라피를 통한 배우자 이해
- 부부동반 등산, 부부캠프, 부부체험 프로그램
⑥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 문화체험, 공연관람 등</td><td>월 4회
회당 60분
(가족공동체 : 240분)</td></tr>
</table></td></tr>
<tr><td>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근로자 변화를 체크
⑤ 5단계 : 피드백 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업체 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불가</td></tr>
<tr><td>⑦ 집단규모</td><td>1:15이내</td></tr>
<tr><td>⑧ 안전관리기준</td><td>1) 체험활동 시, 안전관련 서류 구비
2)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서류 : 배상/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여행자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td></tr>
<tr><td>⑨ 기타</td><td>1) 결제방법
- 서비스 금액 ÷ 4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36,000원, B등급 : 32,000원, C등급 : 28,000원, D등급 : 24,000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r>
<tr><td>A등급</td><td>144,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16,000</td></tr>
<tr><td>B등급</td><td>128,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r>
<tr><td>C등급</td><td>112,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48,000</td></tr>
<tr><td>D등급</td><td>96,000</td><td>24,000</td><td>24,000</td><td>24,000</td><td>24,000</td><td>64,000</td></tr>
</table>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가족공동체 기능강화서비스 합반가능
8) 체험활동 시 : 계획서, 결과보고서 구비·보관 (내용, 장소, 시간, 이용자 명단, 사진 등 포함), 안전관련 구비서류 (매 체험 시마다 구비)
9) 중소기업 근로자 : 사업주는 해당 없음. 근로형태 구분없음
10) 중소기업 범위 : 비영리단체, 복지유관기관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불가
ex)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요양원,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
11) 선택제공 :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 가능 하도록 연간프로그램 계획서 내 ①~⑥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및 서비스 제공
12)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3)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td></tr>
<tr><td>⑩서비스 이용절차</td><td>※ 본 서비스는 기업체 방문형 및 집단활동형으로 기업체 - 제공기간 간 협약 후, 이용자 신청 접수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신청 접수 시, 반드시 기관협약 유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기업체·이용자 욕구 발생 ➡ 서비스 가능 제공기관 확인 ➡ 기업체-제공기관 협약(MOU)체결 ⬇
이용자 신청 (※ 협약서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이용 (6~12개월)</td></tr>
</table>

[시개발사업 사업코드 : 010904)]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어재활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불가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 심리, 상담, 언어·음악·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구 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h></tr>
<tr><td>정부지원금</td><td>144,000원</td><td>128,000원</td><td>112,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16,000원</td><td>32,000원</td><td>48,000원</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내용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및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횟수</th></tr>
<tr><td>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td><td>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시 10분 제공 - 제공기록지에 상담내용 기록)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 적절한 재활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td><td>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td></tr>
<tr><td rowspan="2">부가 서비스</td><td>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td><td>필요시</td></tr>
<tr><td>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상담프로그램</td><td>필요시</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td><td>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td></tr>
<tr><td>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td><td>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30%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td></tr>
<tr><td>⑦ 제공장소</td><td>기관방문형원칙</td></tr>
<tr><td>⑧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2/3시점부터 1:3으로 운영가능)</td></tr>
<tr><td>⑨ 기타</td><td>1) 결제방법
- 서비스 금액 ÷ 4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36,000원, B등급 : 32,000원, C등급 : 28,000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r>
<tr><td>A등급</td><td>144,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16,000</td></tr>
<tr><td>B등급</td><td>128,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d>32,000</td></tr>
<tr><td>C등급</td><td>112,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28,000</td><td>48,000</td></tr>
</table>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어린이집, 유치원(정부지원금 지원기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여부는 정규이용 시간 외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정규 이용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등원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예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기관장이 확인한 월별 출결석 확인서 등)를 제출 시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4)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외, 지역아동센터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결제 가능
5)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6)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여건에 따라 제공하되 결제불가
7)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8)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9)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10) 집단규모 기준의 후기 1:3 운영 시점 명시
※전체 서비스의 2/3시점(9개월)부터 소집단 1:3 운영 가능함(사유서 등 근거서류 구비 필수)
11) 아동 소속기관의 자격자(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소견서 인정
12)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3)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td></tr>
</table>

[시개발 사업코드-051004]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신청 시 수중운동/ 유산소운동 중 택1하여 신청 필수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제외</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프로그램(건강상태점검) :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 운동서비스 : 스포츠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 수중운동 : 아쿠아로빅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월 12만원/ 유산소 운동 월 7만원
<table>
<tr><th>구 분</th><th>수중 운동(A등급)</th><th>유산소 운동(B등급)</th></tr>
<tr><td>서비스 가격</td><td>120,000</td><td>70,000</td></tr>
<tr><td>정부지원금</td><td>108,000</td><td>60,000</td></tr>
<tr><td>본인부담금</td><td>12,000</td><td>10,000</td></tr>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내용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제공 횟수</th></tr>
<tr><td rowspan="2">기본 서비스</td><td>1. 수중운동
①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②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td><td rowspan="2">주 3회, 월 12회
(회당 90분)</td></tr>
<tr><td>2. 유산소 운동
①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②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주 3회, 1회 90분)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td></tr>
</table>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td></tr>
<tr><td>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계</td><td>▹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td></tr>
<tr><td>⑦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개별서비스 인정불가</td></tr>
<tr><td>⑧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5인 이내(1:15)</td></tr>
</table>

항 목	내 용

⑨ 기타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12 = 회당 결제 비용**

- 수중 운동 : 회당 9,000원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0회	11회	12회	
수중 (A등급)	108,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2,000

- 유산소 운동 : 회당 5,000원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0회	11회	12회	
유산소 (B등급)	6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간식 및 식사 제공 불가

8) 수중운동 합반서비스 인정, 유산소운동 합반서비스 불인정

9)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0) 추가 확보 시설 조건부 허용 : 수중운동 수영장 추가확보시설만 허용

11) 협약서 제출 시 권한있는 실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12)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시개발 사업코드-992304]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욕구기준 : 대구 거주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지원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대상(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자녀) 전체 타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 심리학, 상담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 가족상담 및 가족재활(심리 또는 상담)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서비스 가격 : 월 25만원
<table>
<tr><th>구 분</th><th>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th>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th><th>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h><th>D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th><th>E등급
(중위소득 160%초과 ~170%이하)</th></tr>
<tr><td>정부지원금</td><td>225,000원</td><td>200,000원</td><td>175,000원</td><td>150,000원</td><td>125,000원</td></tr>
<tr><td>본인부담금</td><td>25,000원</td><td>50,000원</td><td>75,000원</td><td>100,000원</td><td>125,000원</td></tr>
</table>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불가)</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기본서비스 2번~4번 선택제공가능)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 rowspan="4">기본 서비스</td><td>1. 심리검사(사전/사후검사)</td><td>연 2회
(회당 90분)</td></tr>
<tr><td>2. 가족역동분석
(※ ①,② 중 1가지 이상, 전체회기 중 3회기 이상 실시)
① 역할극
② 가족간 의사소통 모니터링</td><td rowspan="3">월 4회
(가족역동파악 120분
전가족상담 120분
가족일부상담 90분
가족공동체프로그램 240분)</td></tr>
<tr><td>3. 가족상담(가족구성원 2인 이상 원칙)</td></tr>
<tr><td>4. 가족공동체프로그램(필요시)</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전 가족대상 사전심리검사 실시
- 3단계 : 전 가족대상 가족역동 분석
- 4단계 : 가족상담 목표, 계획 설정 후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td><td>기관방문형 원칙</td></tr>
<tr><td>⑦ 집단규모</td><td>제공인력 1:1가족(부모+자녀 등 가족구성원 전체)</td></tr>
</table>

항 목	내 용
⑧ 기타	1) 결제방법(예시) - **서비스 금액 ÷ 4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A등급 : 56,250원, B등급 : 50,000원, C등급 : 43,750원, D등급 : 37,500, E등급 : 31,250**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A등급	225,000	56,250	56,250	56,250	56,250	25,000
B등급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C등급	175,000	43,750	43,750	43,750	43,750	75,000
D등급	150,000	37,500	37,500	37,500	37,500	100,000
E등급	125,000	31,250	31,250	31,250	31,250	125,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제출
8) 가족 역동분석 시 활용기법 : 역할극, 의사소통 모니터링
9)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0) 추가확보시설 등록 불가
11)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시개발 사업코드-080504]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외 지원 가능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택1)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td></tr>
<tr><td>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td><td>▹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거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tr><th>서비스 가격</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160,000원</td><td>144,000원</td><td>16,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 월 4회(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횟수</th></tr>
<tr><td>노인</td><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td><td rowspan="3">주 1회, 월 4회
(회당 60분)</td></tr>
<tr><td>장애인</td><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체형교정
· 자극요법</td></tr>
<tr><td>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체형교정
· 자극요법</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td></tr>
<tr><td>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계</td><td>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td></tr>
<tr><td>⑦ 제공장소</td><td>기관방문형 원칙(예외적용: 보행불가자는 재가방문가능)/ 기관방문, 재가방문 서비스 혼합불가</td></tr>
<tr><td>⑧ 집단규모</td><td>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1:1)</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⑨ 기타</td><td>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4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36,000원 결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정부지원금</th><th rowspan="2">본인
부담금</th></tr>
<tr><th>계</th><th>1회</th><th>2회</th><th>3회</th><th>4회</th></tr>
<tr><td>기본</td><td>144,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36,000</td><td>16,000</td></tr>
</table>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초기상담기록지에 이용자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히 작성된 경우에 한함)로 사전검사를 갈음(별도의 바우처 결제불가)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5)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6)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7) 기관방문형 원칙
단, 재가(보행불가자) 확인용 구비서류
- 장애등급 별 구비서류
· 하지 장애 1,2급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가능
· 그 외 장애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필수
8) 추가확보시설 등록불가: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등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td></tr>
</table>

[시개발 사업코드-090104]

정신건강증진서비스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① 목 적</td><td>▹ 정신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연결체계 구축을 통하여 만성적인 병원 입·퇴원의 반복 혹은 방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보호체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을 높이고자 함.</td></tr>
<tr><td>② 서비스 대상</td><td>▹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td></tr>
<tr><td>③ 제공인력</td><t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td><td>▹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table>
<tr><th>서비스 가격</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
<tr><td>220,000원</td><td>200,000원</td><td>20,000원</td></tr>
</table>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td></tr>
<tr><td>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td><td>1) 서비스 내용
▹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8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table>
<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
<tr><td>기본 서비스</td><td>-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과 지역사회 생활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IN-VIVO트레이닝으로 구성됨
- 토탈케어서비스의 내용은 개별서비스(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Self-care코칭, Family-care 코칭 등)와 집단서비스로 구성됨
- 개별서비스는 이용자의 적응과 기능향상을 위해 단계적 개입으로 이루어짐
→ 1단계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 2단계 Self-care 코칭
→ 3단계 Family-care 코칭
- 또한 개별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집단 서비스를 실시. 집단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사회기술훈련 및 개별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td><td>주 2회/월 8회
(회당 60분)</td></tr>
<tr><td>부가 서비스</td><td colspan="2">그 외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 Life Coaching 자격과정 및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교육 실시</td></tr>
</table>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td></tr>
<tr><td>⑥ 활동유형</td><td>기관방문+재가방문(혼합형), 집단활동형</td></tr>
<tr><td>⑦ 집단규모</td><td>기본서비스 집단 규모 준수(개별상담 1:1, 집단상담 1:5)</td></tr>
</table>

항 목	내 용

⑧ 기타

1)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8 = 회당 결제 비용/ 회당 25,000원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기본	20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0,000

2)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필수 및 결제가능**(※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 참조)
※ 제공기관 보관용 구비서류 : 검사지(검사내용, 검사결과, 검사자 서명 필수), 평가지(평가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반영여부, 평가자 서명 필수)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외 기관 내부 전문인력 검사 시 사업별 등록된 제공인력만 검사 및 결제 가능
※ 사전·사후 검사 결제 시 기본회기에 포함하여 결제(기본회기 1회를 사전·사후검사 시 각1회 대체가능)
3) 서비스 계약 전 미사용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4) 기준정보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에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는 여건에 따라 제공하되 결제불가
5) 1일 정상 1회 가능/ 1일 보강 1회 가능(의료인 협력상담 시 월 1회 한해서 정상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 할 경우 정상 1회 보강 1회로 연속 결제 가능)/ 집단활동형 보강 시 집단 혼합 불가/ 집단활동형 의 경우 개별보강 가능하나, 대상자별 월 1회만 인정
6) 초기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안내 문구 명시
7)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 제공인력 모두 명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대구시 표준 양식 사용(대구시 자체 서식[3-10])**
8)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내용 단계별 활동내용 및 활동유형(집단/개별상담), 집단규모 및 제공장소 상세 명시
9) 집단서비스 실시할 경우 사유서 혹은 소견서 필수
10) 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11) 이용자 이동시간은 서비스 시간에 미포함
12) 집단활동형 프로그램실 면적기준 개선
- 프로그램실별 33㎡이상 설치 기준 준수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13) 추가 확보 시설 등록 불가
14)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경력산정기준 : 자격취득 후(자격증취득, 학위취득 모두 해당) 경력만 인정, 해당 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경력만 인정
- 경력기간산정
  · 상근근무 경력 인정(주 5일 근무 1일 4시간 산정)
    * 평균 주 20시간, 월 80시간 기준으로 연 960시간 이상 인정
  ·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활동시간 명시(전체 경력 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교육, 상담활동, 프로그램진행 등 실무활동만 인정
  · 강의경력, 학교 재학 중 경력, 보조진행 등은 경력 인정 불가
  · 국외취득자격 : 제공인력 등록 시 원본자격증 외 한글로 공증된 자격내용 증빙자료 함께 제출

참 고 자 료

1.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순번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욕구기준 및 기타	구비서류
1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 서비스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연령기준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가능/ 이용 중 부모-자녀 변경불가)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 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자녀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서비스대상자 : 해당 아동 입력**
2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중위소득 120%초과~170%이하 ·연령기준 - 만 4세 이상~만 13세이하 아동·청소년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택 1 제출**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체육관련 기관 평가서와 평가자의 체육관련 자격 첨부
3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맘, 펀펀(Fun,Fun) 한 맘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발달장애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초·중·고등학생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4	노인정서치유 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택 1 제출**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 평가서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5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 만 7세이상~만 13세이하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 부모아동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 불가	**택 1 제출**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추천서(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발급)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 평정척도-4판 -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 BDI : 백 우울척도-자기진단 검사 - 아동불안척도 - 조기정신증검사 -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 강점·난점 설문지

순번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욕구기준 및 기타	구비서류
6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7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소득기준 : 없음 ·연령기준 : 만 12세이상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1) 약물중독 ⓐ DSM-IV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중독자와 그 가족 2) 도박중독 ⓐ DSM-V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이상으로 확인된 도박 중독자 및 가족 3) 알코올 중독 ⓐ DSM-V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4) 복합중독 ⓐ DSM-V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합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기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택 1 제출 -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해당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련 전문기관 기관장의 소견서 또는 평가서(개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정 및 평가를 한 경우 해당되는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필수) ※평가서 예시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신청권자 :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대상자(가족 신청가능)**
8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 없음 ·연령기준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향 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 [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 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택 1 제출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장애아동 2명 확인용)

순번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욕구기준 및 기타	구비서류
9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서비스	·소득기준 : 없음	·대구지역사회 내 중소기업(6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 기업체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선정	- 재직증명서(근로자 확인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600인이하 사업장확인용) - 기업체 협약서(사본)
1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 만 18세이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어재활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 불가	택 1 제출 (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사본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 평정척도-4판 -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 BDI : 백 우울척도- 자기진단 검사 - 아동불안척도 - 조기정신증검사 -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 강점·난점 설문지
11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만 55세이상) ※서비스 신청시 수중운동과 유산소운동 중 택1하여 신청 필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제외	-

순번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욕구기준 및 기타	구비서류
12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연령기준 - 대구 거주 만7세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에 욕구가 있는 가족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대상(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자녀) 전체 타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1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외 지원 가능 ※주거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택 1 제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
14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택 1 제출**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2. 사업별 검사도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 신체불균형 검사 평가서 및 검사지

평 가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평행성측정 검사결과 : 좌(초) / 우(초)

20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예시) 평형성 측정 : 눈감고 외발서기

측도내용	• 눈을 감은 상태로 한발로 얼마만큼 오래 동안 서서 있을 수가 있는가를 보는 평형성 측정 항목입니다. • 눈을 감고 실시하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평형성(balance)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 눈감고 한발로 균형 잡기(closed-eyes foot balance)는 정적평형성(static balance) 측정항목입니다.
실시방법	1. 준비단계 ① 스톱워치(stop watch) ② 계측원, 기록원 2. 측정방법 ① [준비]신호와 함께 맨발로 바닥위에 섭니다. 양손은 허리에 대거나, 벌린다. ② [시작]신호와 함께 양쪽 눈을 꼭 감고 한쪽 발을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린다. ③ 눈을 뜨거나 손이 허리에서 떨어졌을 경우 파울처리 한다. ④ 발이 바닥에 닿거나 신체의 다른 부분이 닿을 경우에도 파울 처리 한다. ⑤ 정해진 선에서 벗어날 경우도 파울처리 된다. ⑥ 눈을 감았을 때부터 평형감각을 잃어 규정된 측정방법에서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으로 인정한다. 3. 측정 시 주의사항 ① 평평한 바닥에서 실시한다. ② 실격 및 파울 조항을 실시자에게 숙지시킨다. ③ 파울 2회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④ 눈가리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⑤ 자세는 곧게 선 상태에서 합니다. ⑥ 들어올린 다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30cm 떨어져야 합니다. ⑦ 2회 실시하여 평균기록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점방법	좌, 우 각각 측정 후 시간 기록
해석지침	좌/우 비교 시 시간이 2초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 불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바른뇌기능통합운동서비스 대상은 좌/우 비교시간 2초 이상인 경우
출처	국민체력100 KSPO 국민체력진흥공단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 노인 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table>
<tr><td>척도명</td><td>노인 우울 척도 한국형
(GDS-k)</td><td>대상</td><td>노인</td></tr>
<tr><td>척도소개</td><td colspan="3">▪ 노인들의 우울측정을 위해 사고, 정서, 인지, 신체, 사회적 측면을 골고루 반영
▪ 긍정적 문항(14개)와 부정적 문항(16개)으로 구성</td></tr>
<tr><td>채점방법 및 해석</td><td colspan="3">▪ 양분척도,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예” 라고 반응한 것에 1점을 부과하여 합산
▪ 문항구성
<table>
<tr><th>하위척도</th><th>문항수</th><th>문항 번호</th></tr>
<tr><td>정서적 불편감</td><td>7</td><td>1,2,3,5,17,23,25</td></tr>
<tr><td>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td><td>6</td><td>6*,7*,10*,15*,21*,22*</td></tr>
<tr><td>신체적 약화 및 건강염려증가</td><td>8</td><td>8*,12*,18,26,27,28,29,30*</td></tr>
<tr><td>인지기능 저하</td><td>6</td><td>9*,11*,14,16*,20*,24</td></tr>
<tr><td>사회적 철수 및 활동감소</td><td>3</td><td>4,13*,19</td></tr>
</table>
(*은 역채점 문항)
▪ 평가기준
- 14~18점 : 경계선 수준 및 경도의 우울증
- 19~21점 : 중등도의 우울증
- 22점 이상 : 심도의 우울증
▪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td></tr>
<tr><td>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td><td colspan="3">▪ 김은영(2006). 재가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td></tr>
</table>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항 목	예	아니오
1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1	0
2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1	0
3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1	0
4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1	0
5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1	0
*6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1	0
*7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1	0
*8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1	0
*9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1	0
*10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1	0
*11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1	0
*12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다.	1	0
*13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0
14	정말 자신이 없다.	1	0
*15	즐겁고 행복하다.	1	0
*16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1	0
17	지쳐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1	0
18	별일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있다.	1	0
19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1	0
*20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긴다.	1	0
*21	기분이 좋은 편이다.	1	0
*22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1	0
2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1	0
24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탓한다.	1	0
25	전부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많다.	1	0
26	전보다 내모습(용모)이 추해졌다고 생각한다.	1	0
*27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1	0
28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1	0
29	요즈음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1	0
*30	이성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0

▶ 벡 우울척도 결과지 및 평가서

(4)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척도명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대상	청소년 / 성인
척도소개	▪ BDI는 우울증의 증상을 바탕으로 우울증의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 ▪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및 기타 증상들에 대한 질문		
채점방법 및 해석	▪ 4점 척도, 총 21문항으로 구성 ▪ 총점이 0-63점까지 평가 ▪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나타냄 ▪ 평가기준 - 9점 이하 : 정상(비우울) - 10~15점 : 경우울증 - 16~23점 : 우울증 - 24~63점 : 중우울증 *19번 아래 질문에 체중 조절 중으로 대답하면 19번 문항은 0점 처리		
척도가 사용된 국내연구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시 하여 주세요.

1.
(0)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나는 슬픔을 느낀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0)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고 느낀다.
(2) 나의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2)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내 자신을 비관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한다.
(3)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을 비난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2)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3)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흥미를 잃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0)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1)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린다.
(2)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2)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3)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즈음 매우 나빠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2)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3)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21.
(0) 나는 요즈음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2) 나는 요즈음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3)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예시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평정척도**-4**판** (ADHD Rating Scale-IV ; ADHD RS-IV, Dupaul**등**, 1998)

척도내용	1) DSM-IV(1994)를 기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부모용과 교사용 각각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준이 산출되어 있어 임상 장면에서 ADHD진단이나 치료효과 평가에 유용함. 2) DSM-IV를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홀수문항의 총점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배열되어 있음.
실시방법	부모 및 교사가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학교단위 선별조사에서 부모평가 13점 이상, 교사평가 18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선별조사가이드북, 2007) 2) 총점이 부모용은 19점 이상, 교사용은 17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김재원 등, 2004)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의 점수 이상인 경우

※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점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세부적인 면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⓪	①	②	③
2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⓪	①	②	③
3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⓪	①	②	③
4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앉아있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5	다른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⓪	①	②	③
6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⓪	①	②	③
7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8	여가활동이나 재미있는 일에 조용히 참여하기가 어렵다.	⓪	①	②	③
9	과제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10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 움직인다.	⓪	①	②	③
11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학교공부나 숙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⓪	①	②	③
12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⓪	①	②	③
13	과제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잃어버린다.	⓪	①	②	③
14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⓪	①	②	③
15	쉽게 산만해 진다.	⓪	①	②	③
16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⓪	①	②	③
17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⓪	①	②	③
18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⓪	①	②	③

예시 2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CASS ; Conners & Well, 1985)

척도내용	1) ADHD 진단을 위한 Cooners Rating Scale-Revised(CRS-R)는 부모용(CPRS), 교사용(CTRS), 청소년용(CASS)으로 구성되며, 세 검사는 각각 L(정규검사)형과 S(단축검사)형이 있음. CASS 단축형척도(S형)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 2) '품행 문제', '인지 문제', '과잉행동', 'ADHD지표' 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2~14세 집단과 15~17세 집단별 규준이 별도로 확립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연령별 한국판 CASS의 절단점은 중학교 1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 고등학교 1~3학년은 모두 42점으로 산출됨.

※ 다음 항목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점수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나쁜 행동만 지적하신다.	⓪	①	②	③
2	나는 가능하면 내게 편리한 대로 규칙을 바꾼다.	⓪	①	②	③
3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배우지(깨우치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4	나는 까다롭고 쉽게 짜증을 낸다.	⓪	①	②	③
5	나는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있을 수가 없다).	⓪	①	②	③
6	나는 때로 울고 싶다.	⓪	①	②	③
7	나는 말썽을 부려서 경찰에 걸린 적이 있다.	⓪	①	②	③
8	나는 학교공부를 정리하기가 어렵다.	⓪	①	②	③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기대가 너무 크다.	⓪	①	②	③
10	나는 힘이 넘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11	나는 공부할 때 소음이 들리면 집중이 깨진다.	⓪	①	②	③
12	나는 규칙을 어긴다.	⓪	①	②	③
13	나는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	⓪	①	②	③
14	나는 몸을 비틀고 꼼지락거리는 편이다.	⓪	①	②	③
15	나는 여러 면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⓪	①	②	③
16	나는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⓪	①	②	③
17	어떤 일을 수분 간 계속하는 게 어렵다.	⓪	①	②	③
18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안절부절못한다.	⓪	①	②	③
19	내 글씨는 형편없다.	⓪	①	②	③
20	나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21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⓪	①	②	③
22	나는 숙제할 때 일어서서 왔다갔다 해야 한다.	⓪	①	②	③
23	나는 공부가 뒤쳐져 있다.	⓪	①	②	③
24	나는 다른 사람 물건을 부순다.	⓪	①	②	③
25	나는 책을 읽을 대 읽던 곳을 잊어버린다.	⓪	①	②	③
26	나는 식사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⓪	①	②	③
2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도 알지도 못하시거나 상도주지 않으신다.	⓪	①	②	③

예시 3 BDI : **백 우울척도- 자기진단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청소년**

1. (0)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나는 슬픔을 느낀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0)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고 느낀다.
(2) 나의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2)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내 자신을 비관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한다.
(3)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을 비난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2)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3)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흥미를 잃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0)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1)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린다.
(2)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2)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3)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즈음 매우 나빠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2)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3)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21. (0) 나는 요즈음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2) 나는 요즈음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3)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중한 우울 상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24~63점: 심한 우울 상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예시 4	불안장애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

척도내용	1) Taylor(1953)의 Manifest Anxiety Scale for Adult의 아동용 버전이며, 0~19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형 척도 2)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모두 37문항으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3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함.
채점방법	1) 각 문항에서 '예'를 1점, '아니오'를 '0'점을 환산 2) 4의 배수 문제는 반대로 '예'를 0점, '아니오'를 1점으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
해석지침	총점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나타냄. 총점 25점이하 정상, 26점~33점 불안감 경도에서 중증도, 34점이상 불안장애 의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6점 이상

※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면 '예'에 V표시를 하고, 맞지 않는다면 '아니오'에 V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NO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어라고 하실까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꾼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예시 5 조기 정신증

❑ 조기 정신증 검사(Eppendorf Schizophrenia Inventory ; ESI)

<table>
<tr><td>척도내용</td><td>독일의 Mass(2000)가 정신분열증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개발한 척도. 정신분열증을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와 정상범위와의 구별을 해주는 진단적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병의 첫 주관적 징후를 느낀 나이와 연관성이 고려되어 일반 인구에서 정신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권준수 등, 2006 ; Mass, 2000에서 재인용)</td></tr>
<tr><td>실시방법</td><td>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 상에 표시</td></tr>
<tr><td>채점방법</td><td>하위요인
<table>
<tr><td>주의 및 언어 결핍
(attention and speech impairment : AS)</td><td>1, 5, 10, 14, 19, 24, 34, 35, 38, 39</td></tr>
<tr><td>모호한 청각
(auditory uncertainty : AU)</td><td>2, 6, 11, 15, 20, 25, 29, 30</td></tr>
<tr><td>이상 지각
(deviant perception : DP)</td><td>3, 7, 12, 13, 16, 21, 26, 31, 36</td></tr>
<tr><td>관계사고
(idea of Reference : IR)</td><td>4, 8, 17, 22, 27, 32, 37</td></tr>
<tr><td>솔직성
(Frankness : FR)</td><td>9, 18, 23, 28, 33</td></tr>
</table>
점수를 환산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규칙
솔직성(FR)항목과 4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AS, AU, DP, IR)의 점수를 합산
솔직성 점수가 0점 또는 1점 이거나 40번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였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료 분석에 제외</td></tr>
<tr><td>해석지침</td><td>AS, AU, DP, IR 항목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초기 정신병 상태 또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절단점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으나, 1차적 선별도구로서 절단점은 29점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됨(권준수, 2006), 4개 항목의 합산점수가 29점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9점 이상</td></tr>
</table>

※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내에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V표를 해주세요. 그러나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동안 그런 적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에 V표를 해주세요. 복용 중인 약이나 술의 영향이 아닌 실제 자신의 최근 상태에 맞는지 생각한 후 답을 해주세요.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⓪	①	②	③
2	가끔 내 청력이 너무 민감해지면서 보통 소리들이 매우 크고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3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⓪	①	②	③
4	그럴 리가 없는데 가끔 어떤 사건이나 방송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⓪	①	②	③
5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⓪	①	②	③
6	뭔가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가 혹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든다.	⓪	①	②	③
7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평범한 물체가 가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8	가끔 나에 대한 음모(모함)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⓪	①	②	③
9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된 평을 한다.	⓪	①	②	③
10	나는 종종 매우 평범한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⓪	①	②	③
11	때때로 내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 같다.	⓪	①	②	③
12	때때로 내가 움직일 때 내 사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⓪	①	②	③
13	내 생각을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⓪	①	②	③
14	텔레비전을 볼 때 화면과 대화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⓪	①	②	③
15	나는 종종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들을 목소리로 여긴다.	⓪	①	②	③
16	가끔 내 몸의 일부가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⓪	①	②	③
17	주변의 물건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높여져 있을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18	나는 때때로 약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19	평범한 말들이 가끔 특별하고 이상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20	가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신, 천사, 악마)의 목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을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21	작은 부분이 전체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가 있다(예: 손에서 손가락이 두드러지게 보임)	⓪	①	②	③
22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인이 내게 은밀히 전달될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23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24	나의 습관 중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⓪	①	②	③
25	내 내면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듯이 뚜렷이 들을 때가 있다.	⓪	①	②	③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26	잠시 동안 내 신체가 변형되는 느낌을 가졌다.	⓪	①	②	③
27	종종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⓪	①	②	③
28	때로 나는 당장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미룬다.	⓪	①	②	③
29	가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나중에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⓪	①	②	③
30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같다.	⓪	①	②	③
31	주변 사람들이 바쁘거나 말을 하면 나는 이미 내 내면의 평정을 종종 잃어버린다.	⓪	①	②	③
32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⓪	①	②	③
33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가끔 기분이 나빠진다.	⓪	①	②	③
34	내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⓪	①	②	③
35	흔하고 친숙한 소리들이 가끔은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서 들린다.	⓪	①	②	③
36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예: 텔레파시를 통해).	⓪	①	②	③
37	나는 이미 어떤 의미 있는 폭로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38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다.	⓪	①	②	③
39	가끔 나는 기억상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⓪	①	②	③
40	나는 위의 모든 질문들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⓪	①	②	③

예시 6 자살생각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naire ; RSIQ, Reynold, 1987)

척도내용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6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점수의 범위는 0~180점 62~72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1번 이상) 77~90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2~3번) 91점 이상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평균 1달에 3번 이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62점 이상

※ 아래에는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지난 달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까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0. 전혀 생각한적 없다 1.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
2. 한 달에 1번 3. 한 달에 2~3번 4. 일주일에 1번
5. 일주일에 2~3번 6.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

NO	내 용							
1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3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4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6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가 원하는 것을 유언장으로 만들어 둘 생각을 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9	사람들한테 내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1	만일 내가 자살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2	살아 있지 않기를 바랬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3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울까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6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NO	내 용							
17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8	기회가 있다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19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0	자살 생각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1	큰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2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내가 자살하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7	정말로 자살할 의도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것을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9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30	자살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예시 7 강점·난점 설문지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 SDQ-Kr, Robert Goodman, 1997)

<table>
<tr><td>척도내용</td><td>1) SDQ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로 부모·교사형, 청소년용으로 구분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2)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증상과 강점을 측정 가능하며, 개입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함.</td></tr>
<tr><td>실시방법</td><td>1) 부모·교사(초1, 초4)/자기보고식(초4, 중1, 고1)
2) 해당사항을 3점 척도 상에 표시</td></tr>
<tr><td>채점방법</td><td>하위요인
<table>
<tr><td>강점</td><td>사회지향행동</td><td>1, 4, 9, 17, 20</td><td rowspan="5">*역점수 문항</td></tr>
<tr><td rowspan="4">난점</td><td>과잉행동</td><td>2, 10, 15, 21*, 25*</td></tr>
<tr><td>정서증상</td><td>3, 8, 13, 16, 24</td></tr>
<tr><td>품행문제</td><td>5, 7*, 12, 18, 22</td></tr>
<tr><td>또래문제</td><td>6, 11*, 14*, 19, 23</td></tr>
</table>
1) 각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 0점, ‘다소 그렇다’ 1점, ‘분명히 그렇다’ 2점으로 환산
2) 역점수 문항은 반대로 환산
3)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td></tr>
<tr><td>해석지침</td><td>1) 총강점 점수는 10점이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총난점의 점수는 40점으로 낮을수록 바람직함.
2)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총점이 17점 이상일 경우, 교사가 작성했을 경우는 16점 이상일 경우, 자기보고일 경우는 20점 이상일 때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점수 이상인 경우</td></tr>
</table>

하위척도별 해석지침

부모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3	14~16	17~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3	4	5~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2	3	4~10

교사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1	12~15	16~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4	5	6~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3	4	5~10

자기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5	16~19	20~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5	6	7~10
	품행문제	0~3	4	5~10
	또래문제	0~3	4~5	6~10

강점·난점 설문지(부모·교사 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자녀 행동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당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내 자녀를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훔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강점·난점 설문지(자기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름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한다.			
2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나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느끼고, 몸이 아프다.			
4	나는 CD, 게임기, 또는 간식 등을 기꺼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5	나는 자주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다.			
6	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보다는 주로 혼자 있는 편이다.			
7	나는 대체로 내가 말한대로 행동한다.			
8	나는 걱정이 많다.			
9	나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나는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나는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나는 자주 싸우는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13	나는 자주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눈물이 난다.			
14	다른 친구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15	나는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하기 어렵다.			
16	나는 낯선 상황에 긴장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나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다.			
18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나는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나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			
23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나는 두려움이 많고 쉽게 놀란다.			
25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집중을 잘한다.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 축약형 약물 남용검사

번호	내 용	예	아니오
1	당신은 의학적인 사용 이외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	당신은 처방약물을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은 동시에 한 약물 이상을 남용한 적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말을 지낸 적이 있습니까?		
5	당신은 언제나 원하면 약물을 끊을 수 있습니까?		
6	당신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남용합니까?		
7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는 약물사용을 제한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8	당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필름이 끊기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9	당신은 약물 사용 시 불쾌합니까?		
10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가 당신의 약물사용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11	당신의 친구나 친척이 당신의 약물 남용에 대해 알거나 의심합니까?		
12	약물남용이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문제를 야기합니까?		
13	가족 중 누구인가가 당신의 약물문제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14	당신은 약물사용으로 인해 친구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15	당신은 약물사용으로 인해 친구를 등한시 하거나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16	약물남용으로 인해 직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17	약물남용으로 인해 실직한 적이 있습니까?		
18	약물의 영향 하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19	약물의 영향 하에 이상한 행동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20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여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21	당신은 약물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22	위험한 약물을 소지하여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23	강도가 높은 약물의 사용으로 금단증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4	약물사용으로 의학적인 문제(금전적 손실, 간염, 간질, 출혈 등)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25	당신은 약물 문제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26	약물사용과 관련된 의학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27	당신은 특히 약물치료를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28	당신은 약물사용과 관련된 문제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 약물남용선별검사 결과 해석

- 예 1점, 아니오 0점
- 4번, 5번, 7번 문항 역문항
- 5점 이하 : 정상, 6점 이상 : 약물남용문제

▶ 도박중독선별검사

1. 귀하가 도박을 하는 경우,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도박을 하게 됩니까?	없음 0	가끔 1	대부분 1	매번 1
2. 도박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돈을 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0	가끔 있음 1	대부분 1	
3. 귀하는 돈을 걸거나 내기를 하는데 있어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 0	가끔 있음 1	대부분 1	

※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칸에 √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1	아니오 0
4. 귀하는 의도했었던 것보다 내기나 게임에 시간이나 돈을 더 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귀하는 도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평판이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귀하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 때문에 벌어진 여러 일들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귀하는 도박을 중단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8. 귀하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도박한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마권, 배팅전표, 복권, 도박관련 자료, 도박할 돈 등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귀하는 돈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배우자 등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도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10. 도박대문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도박으로 인해 직장(학교)에서 일(공부)할 시간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살림할 돈(생활비)에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3.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배우자로 부터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4.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로 부터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5.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 금융회사, 신용조합에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6.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서비스)에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7.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고리대금업자)로 부터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8.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등을 해약해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19.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 및 가족의 물건, 돈산, 부동산 등을 팔아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20. 도박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구했습니까?	예	아니오
	총 점	점

▶ 한국형 도바중독 선별검사(K-SOGS) 해석

한국형 도박중독선별검사도구(K-SOGS)는 병적도박판별을 위해 임상진단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20문항 중 2점 이하는 정상, 3~4점은 문제성도박, 5점 이상으로는 병적도박으로 분류함.

▶ 위험음주자 선별척도

질 문	0점	1점	2점	3점	4점
1.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월1회미만	월2-4회	주2-3회	주4회 이상
2. 술을 마시는 날은 1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소주 1-2잔	소주 3-4잔	소주 7-8잔	소주 10잔이상
3. 한 번에 좌석에서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이상 마신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4.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라면 멈출 수 없었던때가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일어나기 위해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음	월1회미만	월 1회	주 1회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지난 1년간 없었음		지난 1년간 있었음
10. 가족/친구/전문가/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지난 1년간 없었음		지난 1년간 있었음

위험음주자 선별척도 검사결과 해석(김종성 등, 1999)

● **9점이하: 당신의 음주는 아직 위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매주 술을 아주 조금밖에 마시지 않으며, 술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습니다.

● **10점이상-15점이하: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마시는 술의 양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16점이상-19점이하**: 당신의 음주는 현재 **해롭고 위험한 수준**(남용)에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술을 마시며,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경험하며(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함), 술 마신 뒤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를 합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양보다 더 많이 마시거나 그만 마시기가 힘들고, 술을 마셔서 당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직장에 지각, 결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짐, 직장을 자주 옮김, 술 때문에 해고당함,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함, 부인과 문제가 생김, 친구와 멀어짐 등). 당신은 술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일차적으로 술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므로 음주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20이상-40점이하**: 당신의 음주는 현재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검사의 모든 질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술을 마셔서 일어나지 못 하는 날도 있을 것이며, 다른 모든 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음으로 인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으며,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은 7점을 절단점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니코틴 의존검사

문항		대답	점수
1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5분 이내	3
		6~30분 사이	2
		31~60분 사이	1
		60분 이후	0
2	금연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예	1
		아니오	0
3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아침 첫 담배	1
		그 외의 담배	0
4	하루에 보통 몇 개피나 피우십니까?	10개피 이하	0
		11~20개피	1
		21~30개피	2
		30개피 이상	3
5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예	1
		아니오	0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1
		아니오	0
총점			

채점 방법 및 해석 지침

분류	점수
경한 니코틴 중독	0~3
중증도 니코틴 중독	4~6
심한 니코틴 중독	7점 이상

▶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청소년용)

<table>
<tr><td rowspan="2">채점
방법</td><td>[1단계]
문항별</td><td>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다 : 3점, 매우 그렇다 : 4점
※ 단, 문항 8번, 10번, 13번은 다음과 같이 역채점 실시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그렇지 않다 : 3점, 그렇다 : 2점, 매우 그렇다 : 1점></td></tr>
<tr><td>[2단계]
총점 및 요인별</td><td>총 점 ▶ ① 1~15번 합계
요 인 별 ▶ ② 1요인(1,5,9,12,13번) 합계
③ 3요인(3,7,10,14번) 합계
④ 4요인(4,8,11,15번) 합계</td></tr>
<tr><td rowspan="3">고위험
사용자군</td><td colspan="2">총 점▶ ① 45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6점 이상 ③ 3요인 13점 이상 ④ 4요인 14점 이상</td></tr>
<tr><td colspan="2">판정 : ①에 해당하거나, ②~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2">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대부분이며, 비도덕적 행위와 막연한 긍정적 기대가 있고 특정 앱이나 기능에 집착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현실 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 없이는 한 순간도 견디기 힘들다고 느낀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대인관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느낀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곤란감, 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며,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무계획적인 충동성도 높은 편이다.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요청된다.</td></tr>
<tr><td rowspan="3">잠재적
위험
사용자군</td><td colspan="2">총 점▶ ① 42점 이상~44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③ 3요인 12점 이상 ④ 4요인 13점 이상</td></tr>
<tr><td colspan="2">판정 : ①~④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2">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 필요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된다. 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절반 정도는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다분히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신감도 낮게 된다.
▷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td></tr>
<tr><td rowspan="3">일반
사용자군</td><td colspan="2">총 점▶ ① 41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하 ③ 3요인 11점 이하 ④ 4요인 12점 이하</td></tr>
<tr><td colspan="2">판정 : ①~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td></tr>
<tr><td colspan="2">대부분이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심리적 정서문제나 성격적 특성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행동을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며, 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감을 느끼지 않는다.
▷ 때때로 스마트폰의 건전한 활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td></tr>
</tabl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	2	3	4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	2	3	4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	2	3	4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	2	3	4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	2	3	4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1	2	3	4

▶ 쇼핑중독 자가진단

문항	예	아니오
1. 도무지 소비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다.		
2.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든다.		
3. 내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잘 모른다.		
4.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을 숨기곤 한다.		
5. 쇼핑은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6. 사는 물건보다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자체를 더 즐긴다.		
7.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8.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쇼핑을 많이 한다.		
9. 내가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절할 것이다.		
10.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		

해당문항		평가	

▶ **쇼핑중독 자가진단 척도지 해석**

- 건전형 : 해당 사항 없는 사람. 물건 구매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태도를 지녔다.
- 기분파 : 5, 6, 10번에 하나라도 해당.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 과다 쇼핑 : 2, 3, 4, 7, 9번에 하나라도 해당. 일상적으로 쇼핑을 자주하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쇼핑중독 : 1,8번에 하나라도 해당.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별 효과성 검사도구(서비스 제공 전 단계 및 후 단계 총 2회 실시)

사업코드	사업명	효과성 검증	
		성과지표	검사도구
170104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부모의 양육태도척도증진 영유아 발달 수준 향상 신규 고용인력 수 추가 서비스 구매액 서비스 만족도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유대관계척도 한국유아발달검사
160104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움직임기능테스트 밸렌스척도 좌우뇌밸런스테스트 인지능력검사척도	fms검사 biodex밸런스기기 좌우뇌밸런스검사지 mcat-c종합인지능력검사
990404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자아존중감척도 부모자녀간의사소통척도 양육스트레스척도 서비스만족도	자아존중감검사 부모자녀의사소통검사 양육스트레스설문지검사 만족도조사
100104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노인고독감감소 우울감감소 자아존중감향상 서비스만족도 신규고용인력	고독감척도검사 우울감척도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만족도검사
030404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정서적안정감향상, 사회성,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PRC, 킴스이고그램등 SSRS 사회성척도, SEI자아존중감척도, Mood Survey 등 정서적안정척도등
190104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자기효능감향상 GDS우울척도	한국적성공적노후척도 중 자기효능감부분, GDS한국판
990204	약물·도박 중독가정 기능회복토탈케어서비스	생리심리사회적기능회복	자가진단, 변화단계, 금단, 우울증, 스트레스척도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체불편정도	이용자설문
270104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심리검사, 스트레스관리, 직무만족향상,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척도, 투사검사 심리지표향상도(가족기능성, 응집성, 적응성척도)
010904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발달 및 문제행동개선	k-BSID-Ⅱ등, PRES, SELSI등, K-WISC, PEP-R등, KPRC, K-CBCL, SMS, 아동불안척도, 자아개념검사, U-TAP, KISE-BAAT, P-FA, CDI, Scale, SSP, SCT, OSMSE-R, KOSECT, PPVT, CARS 등
080504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일상생활수행능력향상	ADL검사,만족도검사
051004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체성분검사 기초체력검사결과향상 일상생활수행능력향상및 인지기능향상	inbody(체지방측정기) ,ADL등

사업코드	사업명	효과성 검증	
		성과지표	검사도구
992304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부모자녀 양육 스트레스 서비스 만족도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Abidin(1990)의 PSI ① 13세이하 :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안미현과 유안진(1995)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척도 중 15문항의 부모관련 척도 (4점 척도) ② 14세이상 : 조용주(2010), 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논문에서 사용한 '가족 스트레스' 관련 7문항 (5점 척도)
090104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자립능력향상 정서적안정 긍정적대인관계	G.A.F척도, 자기관리기술척도, 자아존중감척도,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정신건강사정평가

4. 적용 연령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9년생	만 36세	1984년생	만 71세	1949년생
만 2 세	2018년생	만 37세	1983년생	만 72세	1948년생
만 3 세	2017년생	만 38세	1982년생	만 73세	1947년생
만 4 세	2016년생	만 39세	1981년생	만 74세	1946년생
만 5 세	2015년생	만 40세	1980년생	만 75세	1945년생
만 6 세	2014년생	만 41세	1979년생	만 76세	1944년생
만 7 세	2013년생	만 42세	1978년생	만 77세	1943년생
만 8 세	2012년생	만 43세	1977년생	만 78세	1942년생
만 9 세	2011년생	만 44세	1976년생	만 79세	1941년생
만 10세	2010년생	만 45세	1975년생	만 80세	1940년생
만 11세	2009년생	만 46세	1974년생	만 81세	1939년생
만 12세	2008년생	만 47세	1973년생	만 82세	1938년생
만 13세	2007년생	만 48세	1972년생	만 83세	1937년생
만 14세	2006년생	만 49세	1971년생	만 84세	1936년생
만 15세	2005년생	만 50세	1970년생	만 85세	1935년생
만 16세	2004년생	만 51세	1969년생	만 86세	1934년생
만 17세	2003년생	만 52세	1968년생	만 87세	1933년생
만 18세	2002년생	만 53세	1967년생	만 88세	1932년생
만 19세	2001년생	만 54세	1966년생	만 89세	1931년생
만 20세	2000년생	만 55세	1965년생	만 90세	1930년생
만 21세	1999년생	만 56세	1964년생	만 91세	1929년생
만 22세	1998년생	만 57세	1963년생	만 92세	1928년생
만 23세	1997년생	만 58세	1962년생	만 93세	1927년생
만 24세	1996년생	만 59세	1961년생	만 94세	1926년생
만 25세	1995년생	만 60세	1960년생	만 95세	1925년생
만 26세	1994년생	만 61세	1959년생	만 96세	1924년생
만 27세	1993년생	만 62세	1958년생	만 97세	1923년생
만 28세	1992년생	만 63세	1957년생	만 98세	1922년생
만 29세	1991년생	만 64세	1956년생	만 99세	1921년생
만 30세	1990년생	만 65세	1955년생	만 100세	1920년생
만 31세	1989년생	만 66세	1954년생	만 101세	1919년생
만 32세	1988년생	만 67세	1953년생	만 102세	1918년생
만 33세	1987년생	만 68세	1952년생	만 103세	1917년생
만 34세	1986년생	만 69세	1951년생	만 104세	1916년생
만 35세	1985년생	만 70세	1950년생	만 105세	1915년생

◎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운영체계 관련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상담센터 ☎ 1566 - 3232 → ④

* 문의사항 : 예탁금, 본인부담금, 카드발급,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결제관련 등

○ 행복 e음 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1566 - 3232 → ②

* 문의사항 : 대상자 신청, 카드발급 신청,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행복e음 관련사항

○ 결제단말기 관련 문의

- LG개통센터 ☎ **1899 - 0656**
- LG A/S센터 ☎ **1577 - 8911**
- SK A/S센터 ☎ **1599 - 3813**

○ 사업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지자체 업무담당과 연락처

지 자 체	연 락 처
중구 복지정책과	053 - 661 - 2513
동구 복지정책과	053 - 662 - 2518
서구 복지정책과	053 - 663 - 2557
남구 행복정책과	053 - 664 - 2543
북구 복지정책과	053 - 665 - 2515
수성구 복지정책과	053 - 666 - 2514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 - 667 - 2515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 - 668 - 3744

○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3-219-0007 (www.dgssc.or.kr)